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70호

**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
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(안) 행정예고**

2013. 7. 1.

중소기업청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170호

「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(안)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7월 1일
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 제248호)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「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」 등 19개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일괄하여 재설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(안 제1조~제19조)

3. 의견 제출

「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 개정고시(안)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우편번호 : 302-701,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중소기업청, 참조 : 행정법무담당관실, 전화 042-481-4360, 팩스 042-472-327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(안)

발령 2013.7.0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00호

제1조(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)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활성화체제 구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2조(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의 개정)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3조(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) 벤처기업 육

성촉진지구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4조(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의 개정)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5조(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의 개정) 중소기업구조고도화지원시책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6조(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)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

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7조(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의 개정)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8조(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의 개정)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9조(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의 개정)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0조(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의 개정) 개인투자조합표준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재검토기한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1조(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의 개정)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2조(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의 개정)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3조(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)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6년 4월 30일**까지로 한다.

제14조(개별기업의 R&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) 개별기업의 R&D기획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5조(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운영요령의 개정)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6조(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의 개정) 통합정보화경영 체제지원사업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7조(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·운영요령의 개정)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·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

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10월 4일**까지로 한다.

제18조(인력채용패키지사업 운영요령의 개정)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5년 8월 23일**까지로 한다.

제19조(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개정)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**2016년 7월 14일**까지로 한다.

부 칙<제2013-00호, 2013. 7. 00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